##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비 고 |
|---|---|---|
| **제38조 (이사의 의무)**<br>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<신설><br>② <생략> | **제38조 (이사의 의무)**<br>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br>③ <현행 제2항과 같음> | |
| **제45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)**<br>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단,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.<br><신설><br>② <생략> | **제45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)**<br>①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는 연간 3억원으로 한다.<br>② 감사의 보수 총액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한다.<br>③ <현행 제2항과 같음> | |